

설계변경심사위원회 결의서

의 제 : 오금지구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위 마감변경에 따른 설계변경

구 분	성 명	찬 성	반 대	서명
위 원 장	장 달 수	○		장 달 수
부위원장	이 우 필	○		이우필
위 원	조 대 원	○		조대원
위 원	곽 흥 준	○		곽흥준
위 원	안 병 기	○		안병기
위 원	정 성 호	○		정성호
위 원	장 한 수	○		장한수
위 원	조 한 보	○		조한보

- 제안부서 : 건설안전사업본부 건설사업처 건축공사부
- 제안근거 : 설계변경심사위원회운영기준(2016.02) 4. 운영절차 4-1
가. 심사·의결대상
- 제안사유 : 오금지구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위 마감변경에 따른 설계변경
- 심사·의결사항 :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, 단가 및 협의낙찰률 사전심사
 - 엘리베이터 홀 기준층 천정마감 변경 : 마감재질 재검토
 - 복도천정 배관커버 설치 : 원안대로 의결함
 - 필로티 하부 천정재 변경 : 원안대로 의결함
 - 동 출입구 경사로 바닥마감 변경 : 원안대로 의결함
 - 쓰레기집적소 바닥마감 변경 : 원안대로 의결함
 - 지하저수조 벽, 천정마감 변경 : 원안대로 의결함

2017년 1월 일

위원장 건설안전사업본부장

장 달 수